# 「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」Q&A

# 가. 지원대상 및 내용

1. 지원대상이 되는 업체 요건은 무엇인가요?
□ 「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」의 지원대상은 추가 공고일('21.5.17.)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와 실내체육시설을 연중 운영하는 실내외체육시설업체입니다. 스포츠(체육)업종 확인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□ 최초 모집에 참여하여 선정된 업체는 추가 모집에 지원·신청이 제한됩니다. 단, 기존 종사자 수에 따른 지원인원 확대분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. [4번 질문 - 종사자 지원가능 인원]
□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<b>참여가 제한</b> 됩니다.
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기업,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② 실외전용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 실외 체육시설에 인력을 채용하려는 사업장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④ 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⑤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⑦ 최초 사업 공고일(21.4.15.) 이후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인 감원*이 있는 사업장 *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등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기업, 학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인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□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기업, 학교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<b>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</b>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3. 지원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□ 지원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 종사자 <b>1명당</b> 인건비 <b>160만원</b>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**지원금**은 **7월분**부터 지급가능하며, **지원기간**은 **최대 6개월**입니다.

#### 4. 종사자는 몇 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
□ 고용보험에 가입된 **기존 종사자(상시 근로자)** 수에 따라 **한 사업장**에서 **최대 5명**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<지원 인원 기준>

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존 종사자	4명 이하	5~19명	20명 이상
최초 지원인원	1명	2명	3명
추가 지원인원	1명	3명	5명

<sup>※</sup> 최초 모집에 참여하여 선정된 업체는 지원인원 확대분(1~2명)의 경우 지원이 가능

□ 법인 또는 개인이 여러 사업장(사업장등록 기준)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#### 5. '재고용'이란 무엇인가요?

□ **체육시설업체**에 근무했으나 **2020년 2월 23일 이후** 코로나19로 실직하였거나 무급휴직자였던 사람을 다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예시

퇴직		고용	재고용 해당 여부
필라테스장	$\rightarrow$	체력단련장	해당
체력단련장	$\rightarrow$	태권도장	해당
요식업	<b>→</b>	탁구장	비해당

□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지 **않은** 무급휴직자 또는 채용 전 무급휴직지원금 **수혜를 포기**한 사람만 고용 가능합니다.

#### 6.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
- □ 기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원받고 있는 다른 일자리 사업이나 일자리 지원금, 고용유지 지원금 등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□ (재고용) '20.2.23.이후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(무급휴업조치자 포함)로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급휴직자 또는 채용 전 무급휴직지원금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참여 가능
- □ **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종사자**에 한해서는 다른 일자리 사업이나 일자리 지원금,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 수혜는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- □ 단, 재난지원금, 버팀목자금 등의 일회성 자금과 일자리 사업 외의 두루누리 지원금,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.

#### 7. 지원금 사업 중복 참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
□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 여부는 **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**에 등록됩니다. 다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이 된 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며, **지원금**을 **환수**할 수 있습니다.

#### 8. 자부담금이 있나요?

□ 자부담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다만, 종사자의 임금(기본급+주휴수당)이 월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과 연차·연장(휴일)근로수당 등 각종수당, 4대보험(사업주부담분) 등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데, 이를 자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
예시

근무시간	급여	지원금(160만원) 초과분 자부담	기타 자부담
주 30시간 근무	월 136만원(최저임금)	미발생	각종 수당, 4대보험
구 30시신 C구 	월 200만원(사업주-종사자 협의)	40만원	각종 수당, 4대보험
주 40시간 근무	월 182만원(최저임금)	22만원	각종 수당, 4대보험
구 40시신 근구 	월 300만원(사업주-종사자 협의)	140만원	각종 수당, 4대보험

- 9. 실지급액(주휴포함 기본급)이 160만원 이하일 경우 실지급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?
- □ 사업주나 종사자의 사정으로 만근하지 못하여 **임금의 실지급액(주휴포함 기본급)**이 **160만원보다 적을 경우**에는, **실지급액만큼만**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예시 '(기본급) 130만원 + (기타 수당) 50만원 = (임금 총액) 180만원'의 경우,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 130만원만 지원합니다. 기타 수당은 사업주의 자부담금이 됩니다.

### 10. 최초 사업 공고일('21.4.15) 이후에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□ 최초 사업 공고일('21.4.15) 이후에 종사자가 **자발적인 의사**로 퇴직(의원면직)하게 된 경우,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면 지원이 가능하지만, 퇴직한 직원을 다시 채용하게 되면 **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** 

□ 최초 사업 공고일('21.4.15) 이후에 종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<b>지원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 종사자를 퇴직</b> 시킨 경우는 <b>지원이 불가</b> 합니다.	2로
12. 사업주의 가족을 고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?         □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에 해당하는 가족을 고용할 경우	경우
지원이 불가합니다.	

11. 최초 사업 공고일('21.4.15) 이후에 인위적 감원이 있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### 13. 이미 무급휴직지원금을 받은 사람을 고용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□ 이미 무급휴직지원금을 받은 사람이어도 **채용 전** 무급휴직지원금 수혜를 **포기**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# 나. 신청절차 및 방법·제출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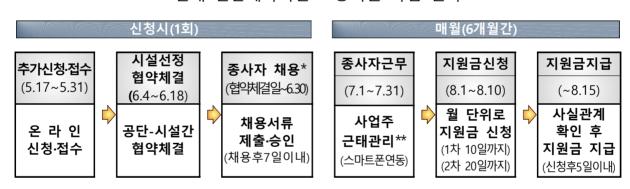
#### 1. 사업 참여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?

- □ 사업 참여 신청은 **5.17(월) ~ 5.31(월) 17:00**이며, **온라인 신청 홈페이지** <a href="http://kspo.keepfit.co.kr">http://kspo.keepfit.co.kr</a> 에서 **PC로만** 가능합니다.
- □ 단, 이메일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.

#### 2.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□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<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절차>



- □ 추가모집과 관련하여 지원금은 7월 1일 근무부터 지원되며, 8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합니다. 예시 1 6월 중 종사자 채용\* → 7월 1일 근무부터 지원 → 8월 지원금 신청 및 지급
  \* 6월 중 근무를 시작하여 6월분 급여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가 부담합니다.
- □ 종사자가 사업기간의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소정근로를 만근하게 되면 다음달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#### 3.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들은 무엇인가요?

- ※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※ 날인 및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날인 및 서명이 없을 경우 미제출로 간주됩니다.
- □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① 사업자등록증
  - ② (법인사업체의 경우)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
  - ③ 위임장(공동대표자 경우만 해당)
  - ④ 실내체육시설 사진(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실내 사진)
  - ⑤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
    -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

#### <서류 발급처>

- ① 사업자등록증
  - (온라인) 국세청 홈택스>민원증명>사업자등록증 재발급 (오프라인) 세무서 및 무인민원발급기
- ② 법인등기부등본 (온라인) 인터넷등기소>법인등기 (오프라인) 등기소
- ③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
  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    - (온라인) →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에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
      - 상단 '증명서발급' 탭에서 '증명서(가입내역확인)신청/발급' 선택
      - ⓒ 발급절차(청구서 작성 → 청구서 접수 → 가입내역 확인 → 결과확인 및 발급)
      - ②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 → 출력

# 다. 종사자 채용 · 고용계약 등

#### 1. 고용할 수 있는 종사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?

- □ 고용 가능한 종사자는 트레이너, 코치, 시설운영·관리 등 **체육시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**로 국가· 공공기관·협회 등에서 발급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, 체육시설업종 종사 경력에 대한 증명 (경력증명서 등)이 가능한 자, 해당 종목 전문성에 대한 입증(단증 등)이 가능한 자, 체육·스포츠관련 학과 학위 소지자(졸업예정자 포함) 등입니다.
- □ 다만, 종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이 제한됩니다.
  - ① 단순보조업무(사무·운영보조원 등) 종사예정자
  - ②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([참고])
  - ③ 협회 등 민간체육지도자 자격이 정지 중이거나 취소된 자
  - ④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인 자
  -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(거주·영주·결혼이민자는 가능)

#### [참고]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5. 선수를 대상으로「형법」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(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)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.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(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#### 2. 종사자와 어떠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?

- □ 사업주는 종사자와 **상호 협의**하여 ①임금은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**최저임금 이상**, ②근로시간은 **3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**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③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.
  - o 월 160만원 초과의 기본급과 연차수당, 연장(휴일)근로 수당 등 법정 수당, 퇴직금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.

### 3. 사업 참여 중간에 종사자를 다른 사람으로 다시 고용해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?

- □ 최초에 고용했던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, **지원금 종료 3개월 이전**까지 **1회에 한하여** 다른 종사자를 고용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- o 이 경우, 자발적 퇴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사직서 등)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  - o 지원금 지급 기간은 한 업체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.

#### 4. 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상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□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임금 총액은 세전 기준으로,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연차(휴가)보상 수당, 휴일(연장)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이며, 상세사항은 공고의 지원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- \*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' 참고

#### [참고1] 최저임금법 제6조

-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(算入)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 6. 12.>
- 1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(所定)근로시간(이하 "소정근로시간"이라 한다)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
- 2. 상여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
- 3.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.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
- 나.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

#### [참고2]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

제2조(최저임금의 범위) ① 「최저임금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4항제1호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- 1.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・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
- 2.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
- 3.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(「근로기준법」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)에 대한 임금
- 4.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
-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- 1.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, 장려가급,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
- 2.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

#### 5. 고용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계약해야 하나요?

□ 고용 계약 기간은 대상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**장기 고용 계약**은 **선정 우선순위에 해당되어**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됩니다.

<업체 선정 우선순위>

(1순위) 재고용으로 고용계약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

(2순위) 신규채용으로 고용계약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

※ 1, 2순위에서 동률일 경우 기존종사자 수가 적은 시설(사업장)을 우선으로 선정

#### 6. 종사자 채용은 사업 참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?

□ **6월 30일**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. 대상자 선정 발표 이후 선정된 업체는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 종사자를 채용해야 합니다.

#### 7. 교육 대상은 누구이고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?

- □ **사업주**와 **종사자**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교육 시간은 5-10시간으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.
  - o 체육인재아카데미(https://nest.kspo.or.kr)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하며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o 필수과정의 경우, 80%이상 수강하여야 하며, 선택과정은 수강희망 시 들을 수 있습니다.
  - o 교육내용은 부정수급 방지, 건강안전, 법정교육 등입니다. 상세한 교육내용은 추후 올라올 공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